

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(안)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본 조례(안)은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·식품접객업·관광숙박업의 시설설치를 근본적으로 제한시키되,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숙박업등의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직할하천·준용하천 등의 상류의 유하거리 50미터 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,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·운용되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및 고속도로에서 100미터이상, 국도·지방도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함.(안 제3조)
- 나. 안 제3조에서 정한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 외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숙박업등의 설치와 소규모 식품접객업, 도로변 휴게소안 식품접객업의 설치 임·도예단지·휴양시설안에 설치하는 민박형 숙박업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정함.(안 제4조)

3. 검토의견

본 제정조례(안)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대하여 조례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됨